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9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른 국가재정자금지원기준과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나. 현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조문의 구성 및 배열순서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유치촉진지구 용어 변경(안 제3조, 제19조, 제24조)

◦ 기업유치촉진지구 → **투자유치촉진지구**로 개정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

◦ **고용보조금(안 제13조)**

· 20명이상 내국인 신규 고용시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10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6억원이하

◦ **교육훈련보조금(안 제14조)**

· 20명이상 내국인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시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10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6억원이하

다. 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 **고용보조금(안 제20조)**

· 20명이상 내국인 신규 고용시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1억원이하

◦ **교육훈련보조금(안 제21조)**

· 20명이상 내국인 신규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시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1억원이하

◦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안 제22조)**

·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

→ 투자금액의 20퍼센트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 **이전보조금(안 제23조)**

· 본사 이전시 이전한 본사에 상시고용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50만원씩 기업당 5억원까지

· 공장이전시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 **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특례(안 제25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이전시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라. 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안 제29조)

◦ 투자유치촉진 및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마.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30조)

◦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의 중복지원 금지

◦ 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 초과지원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참고사항 : 붙임

◦ 경상북도 및 도내 자치단체 조례내용 비교

◦ 관련법령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영주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당연직위원 및 시·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영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법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

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 ①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주주이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9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50만원까지 6월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인프라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하는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

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보 칙

제28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유치기업 주변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주변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중복지원의 제한)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경상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실적보상)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내 기업및투자유치조례 인센티브 비교

<2005. 1월말 현재>

항 목	우리시	경북도	구미시	안동시	봉화군
제정일자	2004. 6. 7	2004. 4. 1제정 2005. 1. 10개정	2004. 11. 16	2004. 7. 8	2004. 8. 6
외국인투자 지원범위 (제9조)	• 보조금의 지원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주주이어야 한다	•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지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주주이어야 한다.	•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 대주주이어야 한다	좌 동	좌 동
고용보조금 (제14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조 지원 인력은 3년간 의무고용 (지원대상 및 범위 등 규칙에 규정)	•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100만원까지 6월범위안 • 기업당 6억원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20명초과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좌 동	좌 동
교육훈련 보조금 (제1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보조 지원 인력은 3년간 의무고용 (지원대상 및 범위 등 규칙에 규정)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월100만원까지 6월범위 • 기업당 6억원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 훈련시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좌 동	좌 동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제16조)	• 공장시설의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 현금지원 • 투자금액의 20% 범위내 지원	우리시와 동일	좌 동	좌 동	좌 동
기업유치촉진지구지정 (제19조)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좌 동	좌 동	우리시와 동일

항 목	우리시	경북도	구미시	안동시	봉화군
국내기업지원대상 (제20조)	• 국내기업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 • 기업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	•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 신규고용 20인 이상 •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	•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	좌 동	좌 동
(국내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제21조)	• 기업촉진지구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기업지원 규정을 준용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20명초과 1인당 월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시 20명초과 1인당 월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좌 동	좌 동
(국내기업) 교육훈련 보조금 (제21조)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 훈련시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 훈련시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 •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좌 동	좌 동
(국내기업)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제22조)	•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 건축비, 인프라시설 등 시설보조금 •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비의 20%범위내	•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 건축비, 인프라시설 등 시설보조금 •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비의 20%범위내 • 기업당 최고 50억원	• 우리시와 동일	좌 동	좌 동
이전보조금 (제23조)	• 다른자치단체에서 관내로 이전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괄적 규정)	• 상시고용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 이전시설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 범위내 기업당 최고 50억원지원	좌 동	좌 동 • 이전시설 투자비중 토지구입비 제외	좌 동

항 목	우리시	경북도	구미시	안동시	봉화군
(국내기업) 수도권기업 이전의 폐해	• 별도규정 없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 국가의 제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될때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 우리시와 동일	• 우리시와 동일	• 우리시와 동일
(국내기업) 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함 (별도 규정 없음)	• 우리시와 동일	• 우리시와 동일	• 초기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관내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100인이상이거나 원자재 50%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우선 매각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매입부지는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 우리시와 동일
(국내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조례 제22조)규정에 포함 (별도 규정 없음)	• 우리시와 동일	• 우리시와 동일	• 관내 가동중인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투자시설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제20조)	• 우리시와 동일

항 목	우리시	경북도	구미시	안동시	봉화군
(국내기업) 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조례 제22조)에 규정 (별도 규정 없음)	• 우리시와 동일	• 우리시와 동일	• 입주보조금 및 이전보조금 지원 대상 국내기업이 공장이전 또는 설립을 위하여 국,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 우리시와 동일
(국내기업) 유치기업 주변지원	• 별도규정 없음	• 우리시와 동일	• 우리시와 동일	•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국내기업) 이중지원등에 관한 적용례	• 별도규정 없음	•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우리시와 동일	• 경북도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안동시지원에서 제외함. 다만,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의 범위내 지원 (제28조)	• 우리시와 동일

4.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발췌

□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o 법 제2조(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련)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를 말한다.

4. "외국인 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나 지분 소유(령 제2조제2항)

③법 제2조제1항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금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o 법 제9조(안 제9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o 법 제3조제2항(안 제10조 금융지원 관련)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대주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 **법 제13조(안 제11조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특례 관련)**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기타 국, 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동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6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 등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있는 토지 등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령 제19조제3항)

③법 제13조제6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령 제19조제7항)**
> ⑦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o **법 제14조제1항(안 제12조 및 제14조 입지·교육훈련 보조금 관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o **법 제14조제4항(안 제13조 고용보조금 지원 관련)**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말한다(령 제20조제4항).**

o **법 제14조의2(안 제1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관련)**

①국가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 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지원용도(제20조의2)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본조신설 2004.1.13]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 ·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o **제17조(안 제18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관련)**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표 오른쪽란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의 대행을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은 그중 별표 1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이하 "일괄처리민원사무"라 한다)와 별표2의 외국인투자관련 개별처리민원사무(이하 "개별처리민원사무"라 한다)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에는 별표 1 왼쪽 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관할 외국인투자진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 하는 기업이 지방이전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 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 (기업의 지방이전)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산업자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유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